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730 |
|----------|-----|

2024. 11. 25.(월)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지현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11월 19일

-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박지현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 내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 아동 등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통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아동생활시설’ 및 ‘보호아동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5조)
- 보호아동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보호아동 등에 대한 문화활동비 지급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청주시의회에서 열린 아동생활시설 문화활동비(용돈) 지원을 위한 간담회(‘24. 8. 13.)에서 시설 보호아동에 대한 문화활동비 및 건강, 학습, 문화활동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간담회 참석자: 시도의원,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자립지원시설 기관장 등 20여 명
- 특히 시설 보호아동에 대한 문화활동비(용돈)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2024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를 통해 지자체 및 해당 시설에 지원을 권고했으며,
 - 현재 충북, 울산, 강원, 경남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는 이미 시도 예산으로 문화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음.
- 이에 충청북도 내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 아동 등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통합 촉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아동생활시설’ 과 ‘보호아동 등’ 의 용어를 정의함.
 - ‘아동생활시설’ 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충청북도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보호대상 아동이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하고 있는 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으로 정의함.

- ‘보호아동 등’ 은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이하 ‘아동생활시설’ 이라 함)에서 보호 중인 사람으로 정의함.
- 본 조례안에서 ‘보호아동 등’ 이란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아동’ 은 「아동복지법」 제3조¹⁾에서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국민 다수가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인지하고 있음.
 - 또한 아동생활시설 보호대상아동은 과거 「아동복지법」 에 따라 18세에 달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했던 것이 법 개정(‘21.12.21.)에 따라 현행 법상 아동이 아닌 청소년 및 청년의 연령대인 25세 또는 그 이상의 연령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됨.

※청소년: 9~24세(청소년기본법) / 청년: 19~34세(청년기본법)

<아동복지법 개정>

| 이전 법 | 현행 법 [시행 2021.12.21.] |
|---|---|
| <p>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p> | <p>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 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1)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물론 입법 규정 상 같은 용어에 대해서도 타 법령 및 조례와 다르게 정의할 수 있음. (이 경우 용어 정의의 적용 범위는 해당 조례로 제한됨) 그러나 ‘아동’이란 용어가 갖고 있는 인지적 보편성으로 인해 조문 이해 시 다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바, ‘보호아동’에 의존명사인 ‘등’을 넣어 그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용어 사용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보호아동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 단 지원계획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아동복지법」 제8조²⁾에 따라 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6조는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내용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7조는 보호아동 중 초등학생 이상 및 그 연령대 해당자에게 용돈 개념의 문화활동비 지급에 대해 규정하였음.
 - 현재 시설 보호아동 등의 문화활동비(용돈) 지급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급 금액 및 방식 등의 기준이 될만한 가이드라인도 없음.
 - 이에 충북도 내 33개 시설(아동양육시설 10개소, 공동생활가정 23개소)마다 지급 금액도 다르고 일부 연령대의 경우 지급하지 않는 시설도 있음.
 - 따라서 충북도 차원의 문화활동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충북도 내 시설 보호아동 등에 대한 문화활동비 지급액 및 방식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단, 도에서는 안 제7조제4항에 따른 문화활동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시,

2) 「아동복지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문화활동비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시설 보호아동 등이 올바른 소비 습관 및 경제관 확립자립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해야 할 것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타당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 또한 도 담당부서 의견수렴 및 조례안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
- 다만, 보조금 지급 근거에 관한 규정에 대해 합리적이고 탄력적 예산 운용을 위해 권한 부여 형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수정 안 요 지

가. 수정이유

- 보조금 지급 근거에 관한 규정에 대해 합리적이고 탄력적 예산 운용을 위해 권한 부여 형식을 취하도록 하는 법제처의 권고 및 지원에 대해 권한 부여 형식을 취하고 있는 근거 법령에 따라 기존 의무부과 형식을 권한 부여 형식으로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내용

- 문화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항 중 “~지급한다” 는 의무부과 형식을 “~지급할 수 있다” 는 권한 부여 형식으로 수정함. (안 제7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대비표
-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수정안 포함)」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 아동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 관련 |
| 번호 | 제730호 |

발의연월일: 2024년 11월 19일

발 의 자: 이동우 의원

가. 수정이유

- 보조금 지급 근거에 관한 규정에 대해 합리적이고 탄력적 예산 운용을 위해 권한 부여 형식을 취하도록 하는 법제처의 권고 및 지원에 대해 권한 부여 형식을 취하고 있는 근거 법령에 따라 기존 의무부과 형식을 권한 부여 형식으로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내용

- 문화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항 중 “~지급한다” 는 의무부과 형식을 “~지급할 수 있다” 는 권한 부여 형식으로 수정함. (안 제7조)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 원 안 | 수 정 안 |
|---|---|
| <p>제7조(문화활동비 지급) ① 도지사는 보호아동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활동비를 <u>지급한다.</u></p> <p>1. ~ 3. (생략)</p> <p>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생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동일한 문화활동비를 <u>지급한다.</u></p> <p>③ 문화활동비는 보호아동 등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u>지급한다.</u></p> <p>④ (생략)</p> | <p>제7조(문화활동비 지급) ① 도지사는 보호아동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활동비를 <u>지급할 수 있다.</u></p> <p>1. ~ 3. (원안과 같음)</p> <p>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생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동일한 문화활동비를 <u>지급할 수 있다.</u></p> <p>③ 문화활동비는 보호아동 등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u>지급할 수 있다.</u></p> <p>④ (원안과 같음) .</p> |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아동 등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 통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생활시설”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 중 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을 말한다.
2. “보호아동 등”이란 제1호에 따른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아동 등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아동 등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생활시설의 보호아동 등의 지원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보호아동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은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보호아동 등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사업
2. 문화활동 지원 사업
3. 학습동기부여 및 학습여건 지원 사업

4. 멘토링 등 관계형성 및 상담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상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문화활동비 지급) ① 도지사는 보호아동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생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령대이면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생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동일한 문화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활동비는 보호아동 등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활동비의 지원 내용,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17. 10. 24., 2020. 12. 29.>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2016. 3. 22.>
-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9조(대학원)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 3. 23.>

- ②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 ③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에게 문화활동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자립과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 도모

2. 비용 발생 요인

- 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 문화활동비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3. 관련조문

- 안 제7조(문화활동비 지급)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도내 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의 학령별 문화활동 지원

나. 추계 결과

- 문화활동비 지원 : 451명, 339,600천원 (도비 40, 시군비 60)

- 초등학생 30천원 × 149명 × 12개월=53,640천원

- 중 학 생 50천원 × 149명 × 12개월 = 89,400천원

- 고등학생 80천원 × 84명 × 12개월 = 80,640천원

- 대 학 생 140천원 × 69명 × 12개월 = 115,92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40%) 및 시군(60%) 매칭 지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